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1.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대통령께서는 '2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점검회의에서 "정부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

2.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니,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통한 SNS 활용, 건설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 나. 알콜용 손 세독제
-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3.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지방관서(산재예방지도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공단(기술총괄본부)



전문위원

임세중

보건의서관

이동규

산업안전과장

고광훈

산재예방보상 전결 2020.1.31.

정책국장

박영만

협조자

시행 산업안전과-447

(2020. 1. 31.)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731

팩스번호 044-202-8092

/ osamalim@moel.go.kr

/ 대국민 공개